

제18장  
제도 및 최종 규정

제1절  
제도 규정

제18.1조  
연락처

1.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연락처를 수립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나. 조지아의 경우, 경제지속가능개발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적시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3.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18.2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조지아의 경제지속가능개발부장관 또는 그들이 각자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감독한다.
-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 다.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라. 제 16 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분야를 검토한다.

## 3. 공동위원회는

- 가. 임시 및 상설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 나.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
-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고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 라.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 양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첫 회기로 회합한다.

나. 그 후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정기 회기는 각 당사국이 순차적으로 의장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접수부터 30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특별 회기는 그 회기를 요청한 주최 당사국이 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기 또는 회의 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7. 공동위원회의 및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다. 결정의 이행은 적용 가능한 내부 절차에 따를 수 있다.

### 제18.3조

#### 소위원회 및 작업반

1. 다음의 소위원회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제8.15조(서비스무역 소위원회)에 따른 서비스무역 소위원회

나. 제2.11조(상품 무역 소위원회)에 따른 상품 무역 소위원회

다. 제10.71조(지식재산권 소위원회)에 따른 지식재산권 소위원회

라. 제4.15조(관세 소위원회)에 따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관세 소위원회

마. 제13.10조(경제협력 소위원회)에 따른 경제협력 소위원회

2.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빈도는 이 협정의 관련장에 규정된다.

3. 그 밖의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는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의 구성, 회합빈도 및 기능은 이 협정과 합치하게 공동위원회가 결정한다.

5. 공동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6. 공동위원회는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거나 소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해산할 수 있다.

## 제2절 최종 규정

#### **제18.4조**

####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18.5조**

####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외교 경로를 통한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18.6조**

#### **개정**

1. 개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 협정에 도입될 수 있고, 이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작성되며 이 협정의 제18.5조에 따라 발효한다. 작성된 문서는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이며, 이 협정에 통합된 WTO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을 그에 따라 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제18.7조**

####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협정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180일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 제18.8조

####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 년 [ ] 월 [ ]일 [ ]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